

대학원 약학과 내규

- 2013. 8. 21. 제정
- 2014. 11. 26. 개정
- 2016. 2. 3. 개정
- 2016. 6. 22. 개정
- 2017. 9. 1. 개정
- 2018. 9. 1. 개정
- 2019. 11. 21. 개정
- 2020. 4. 8. 개정
- 2021. 2. 10. 개정
- 2022. 11. 21. 개정
- 2023. 1. 30. 개정
- 2023. 11. 13. 개정
- 2023. 12. 06. 개정
- 2024. 4. 03. 개정
- 2025. 8. 21. 개정

제 1 조 (적용범위)

- 본 내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 ① 2013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본 내규를 적용한다.
  - ② 2013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생으로, 바이오융합과학과 혹은 생명·약학부에서 소속 변경한 학생은 원칙적으로는 이전 소속 학과의 내규를 따르되, 학과 교수회의에 따라 약학과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201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제10조 (졸업자격기준)을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도 준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④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개정된 내규를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내규를 적용한다. 제14조 (대학원 학생의 징계)의 경우, 이전 입학생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제 2 조 (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의 배점기준은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의 동일하고, 총 100점 중에서 서류전형 60점, 구술면접 40점으로 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학과전형     | 석사                             | 박사 및 통합 |
|----------|--------------------------------|---------|
| 서류전형(60) | 학업성취도(40)                      | 석사와 동일  |
|          | 연구 및 학업계획(10)<br>추천 및 종합평가(10) |         |
| 구술면접(40) |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40)               | 석사와 동일  |

- ② 전형위원은 학부장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3인, 박사학위과정 3인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그룹으로 나누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조 (대학원 석·박사과정 교과과정)

- ① 약학과의 핵심과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 1. 30.)

| 학수<br>번호 | 과목명<br>(변경전) | 과목명<br>(변경후) | 디비전 | 시간<br>학점 | 개설<br>학기 | 인정<br>기간 |
|----------|--------------|--------------|-----|----------|----------|----------|
| G16896   | 약제학특론        | 나노의약품및제형개발   | III | 3/3      | 2        | 2023-2   |

|        |                                                           |                                                              |                             |     |   |                |
|--------|-----------------------------------------------------------|--------------------------------------------------------------|-----------------------------|-----|---|----------------|
|        | (Advanced Pharmaceuticals)                                | (Advanced Topics in Nano-pharmaceutics And Formulation)      | 의약품 개발                      |     |   | 수강까지           |
| G16831 | 고급약품분석화학<br>(Advanced Pharmaceutical Analysis)            | 의약품최신분석기술<br>(Advanced Pharmaceutical Analysis)              | IV<br>의약품분석 및 의공학           | 3/3 | 1 | 모든 학기          |
| G16861 | 의약화학특론I<br>(Advanced Medicinal ChemistryI)                | 의약설계및합성<br>(Advanced Medicinal ChemistryI)                   | II<br>후보물질 발굴               | 3/3 | 1 |                |
| G16868 | 천연물유래의약품<br>(Drugs from Natural Products)                 | 천연물유래의약품정보<br>(Informations on Natural Medicines)            | II<br>후보물질 발굴               | 3/3 | 2 |                |
| G16895 | 약물학특론II<br>(Advanced PharmacologyII)                      | 신약표적약리<br>(Targeted Pharmacology)                            | III<br>의약품 개발               | 3/3 | 2 |                |
| G16904 | 의약정보및문헌평가<br>(Drug Information and Literature Evaluation) | 임상연구설계및문헌평가<br>(Drug Study Design and Literature Evaluation) | V, VI<br>임상적용, 약물성과 분석 및 정책 | 3/3 | 2 |                |
| G17262 | 고급약품생화학<br>(Advanced Pharmaceutical Biochemistry)         | 생체조절타겟발굴<br>(Identification of Biological targets)           | I<br>타겟발굴 및기전               | 3/3 | 2 |                |
| G16857 |                                                           | 약물전달시스템<br>(Advanced Topics in Biotherapeutics Delivery)     | III<br>의약품 개발               | 3/3 | 1 | 2021-1<br>수강부터 |
| G16858 |                                                           | 감염제어분자기전<br>(Infection control and molecular mechanisms)     | I<br>타겟발굴 및기전               | 3/3 | 1 |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고급생화학(G16829)→고급약품생화학(G17262)으로 변경됨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고급생화학을 수강한 경우 고급약품생화학을 들은 것으로 인정함)

※2019년 9월 1일 생명약학부에서 약학과로 전과한 학생들은 생명약학부 내규에 따른 핵심과목 이수를 인정함. (개정 2019.11.21.)

② 석사학위과정은 핵심과목 중 2과목 이상,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 을 수강한다. 단,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는 석사학위과정은 핵심과목 중 1과목 이상,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박사학위 과정 학생 중 본교 약학과에서 석사를 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핵심과목 중 1과목을 인정한다. (개정 2018. 9. 1.)

③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는 신약개발과정 디비전별 교과목 분류를 적용한

다. 석사학위과정은 3가지 이상의 디비전을 수강하여야 하며,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은 5가지 이상의 디비전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박사학위 과정 학생 중 본교 약학과에서 석사를 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3가지 디비전을 인정한다. (개정 2021. 2. 10.)

#### 제 4 조 (졸업이수학점)

- ①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으로 한다.

#### 제 5 조 (보충과목제도)

- ① 약학 관련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약학 관련학과 이외 다른 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출신학교성적 중 수강한 전공교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충과목을 부여한다.

#### 제 6 조 (종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        |                               |
|--------|-------------------------------|
| 석사학위과정 | 핵심과목 중 1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1과목 선택 |
| 통합학위과정 | 핵심과목 중 2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1과목 선택 |
| 박사학위과정 | 핵심과목 중 1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2과목 선택 |

※ 수강과목 : 생명약학부, 약학과, 제약산업학과에서 수강한 과목 모두 인정함.  
 (2019년 9월 1일 생명약학부에서 약학과로 전과한 학생들은 생명약학부 내규에 따른 핵심과목 선택을 인정하며, 학수번호가 다르더라도 교과목명이 같은 경우 약학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함. (개정 2019.11.21.)

※ 박사학위 과정 학생 중 본교 약학과에서 석사를 한 경우, 석사에서 수강한 과목 중 종합시험을 보지 않은 과목은 박사학위 종합시험에서 선택하여 응시 가능함.(학생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③ 시험일은 6월과 12월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시험일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④ 합격점은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한다.  
 ⑤ 50점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50점미만의 경우 재시험 응시 자격이 없고, 졸업이 한 학기 연기된다.  
 ⑥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로 변환하여 석사 학위를 받는 경우, 적어도 1학기 이전에 결정하고, 석사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는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지만 2023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대상자부터 석사과정생에 한하여 팀티칭 교과목을 예

외로 타시험과목과 겹치게 출제가 가능함. (개정 2022.11.21.)

※ 팀티칭의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모든 담당교수가 출제하도록 함. (개정 2022.11.21.)

#### 제 7 조 (영어시험)

- ① 영어시험은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 원본을 4월말, 10월말에 학과로 제출하고, 학과에서 원본대조 확인 후 보관한다.
- ② 영어시험의 합격기준은 TOEFL(CBT) 173점, TOEFL(IBT) 61점, TOEIC 585점, TEPS 468점, IELTS 5.5점으로 한다.
- ③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면 합격 처리한다.

#### 제 8 조 (통합자격시험)

- ① 통합학위자격은 평균성적이 3.0이상이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구두 발표로 자격을 심사한다.
- ② 시험일은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6월과 12월 중에 시행한다.  
핵심 교과목의 시험문제는 시험 해당 학기에 수업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이전 학기에 수업을 담당한 교원이 시험문제를 낸다.

#### 제 9 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

- ① 석사과정 입학을 지망하는 학생은 입학 전 1, 2, 3지망을 작성 및 제출하고 대학원 입시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 1인은 1년에 5명 이내의 석사과정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 ③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2개 이상의 실험실을 각 1~2개월씩 rotation한 후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 ④ 대학원 입시위원회는 전년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교원과 신입교원의 연구실에 1년에 최소 1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를 배정순위의 최우선으로 한다.
- 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교내외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⑥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2/3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 4/5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08.21.)
- ⑦ 논문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각 과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가. 석사과정

- (1)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지도교수와 심사일 및 심사위원에 대한 상의를 거친 후,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12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제청서와 졸업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 및 발표 실적 목록(증빙자료)을 제출한다. (개정 2017. 9. 1)

## 나. 박사과정

- (1)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심사통과 후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 후 심사결과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최소 1년에 1번씩 학생을 포함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박사과정생의 졸업논문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한 후 학위청구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 (2)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이 결정되면, 겨울학기 졸업 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1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5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제청서와 졸업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 실적 목록(증빙자료)을 제출한다. (개정 2017. 9. 1)

## 제 10 조 (졸업자격기준)

- 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전국 규모 이상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회 이상 포스터를 발표하고,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해야 한다.<sup>1)</sup> (개정 2016. 2. 3)
- ②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1저자로 국내외 SCI(E)급 JCR 분야별 상위 15% 이내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상위 50% 이내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sup>2)</sup>해야 한다. (단, 2019년 9월 1일 생명약학부에서 약학과로 전과한 학생들은 생명약학부 입학 시 기준이 적용되어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면 인정됨 (개정 2019.11.21.)(개정 2017. 9. 1)
- ③ 학연 협동과정생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①항과 동일하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②항의 요건에서 게재 논문 편수를 1.5배로 한다. (개정 2016. 2. 3)

## 제 11 조 (학위수여)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본교 학위논문제출 규정 및 약학과 내규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약학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3. 12. 06)
- ②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신에 대체 실적 트랙을 선택하여 취득요건을 만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취득요건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3. 12. 06)

### 가. 대체 실적 트랙

-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 (2) 수료 기준(24학점+보충 학점 이수 및 누계 평점 3.0이상)을 충족한 자
  - (3)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 SCI(E)급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 (단, 지도교수가 저자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리뷰논문 불인정 함)

---

1)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회발표는 반드시 제1저자여야 하고 투고하는 논문은 공동저자도 인정한다.  
2)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예정도 인정한다.

-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 게재 완료된 실적물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① 8월 졸업:당해 년도 1월1일~6월30일

② 2월 졸업:전년도 7월1일~12월31일

(5)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6) (1)~(5) 이외의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 **제 12 조 (대학원 약학과 학사운영위원회)** (신설 2016. 6. 22)

대학원 약학과는 대학원 학칙 제 40 조의 2에 의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학칙 제 40 조의 3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제 13 조 (부전공)** (신설 2020. 4. 08.)

- ① 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의 타 학과/학부 부전공 이수 및 타 학과/학부 소속 학생의 약학과 부전공 이수를 허용한다.
- ② 타 학과/학부 소속 학생이 약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필수 이수요건인 15학점 중 약학과 핵심과목을 1과목(3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③ 약학과 부전공 자격 여부는 최종 대학원 약학과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제 14 조 (대학원 학생의 징계)** (신설 2021. 2. 10.)

- ① 본 대학원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 징계 규정에 의한다.
- ② 본 대학원의 학생의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 졸업 요건 등에 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징계를 결정한다.